

안세재경저널 회원이용 2022년 4월 6일 (수) 주간지 14회 발행 110페이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의무의무 11페이지 03000000

상장사 · 중소기업의 투명회계 · 적법세금 · 성공경영 정보



안사회계법인 재경저널



공인회계사 저널 **eAnSe.com**

온라인 30분내 Q&A 문서답변과 방송



2022/4/6 통권 1565호

CEO·CFO·COO·회계책임자·조세전문가·재경실무자·총무담당자·모든 관련자 **환영** 주간지

CEO 에세이 - 이해의원장
CEO에게 용인술은 없다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CFO·회계실무자·조세전문가 정보

- 업무무관 부동산의 세무상 처리 방법 · 올해부터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기한 3월 말에서 4월 말로 연장
-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 재산은닉한 지능적 고액채납자 추적조사 실시
- 코로나19로 인한 사업보고서 등 제출지연 관련 재재 면제 심사결과
- 2022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 발표
- 고용노동부, 여행업 등 14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 및 택시운송업 신고 지정

CMO·마케팅 Tax consulting 색션

- 무주택 세대주인 임원에게 주택취득자금으로 지급하는 퇴직금은 손금 인정됨 (p.13)

전직원 회람 공지 MEMO+경영관리자의 재무의사결정과 稅計·經營 戰略

<AI와 코로나19로 바뀌는 BC세계와 AC세상의 차이점>

개념구분	코로나19 이전 (BC : Before COVID-19)	코로나19 이후 (AC, After COVID-19)
질병의 개념	일부지역 또는 일부 대륙(위생불량), 일시유행	전세계에 급격히 전파(환경파괴가 원인) 상시 유행
공간의 개념	아날로그 영향력과 대면 활동중심	디지털화 더욱 가속과 비대면 중심
부동산과 입지	사람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시내 중심의 광장문화)	전염병을 확실히 차단예방 할 수 있는 곳(외곽의 집콕 등)
시간의 개념	공간이동을 전제한 소요시간 후 소통	온라인AI를 통한 실시간 즉시 소통
생존방법	각종 대면모임 활성화, 관계 다양화	대면접촉 삼가, AI, IT, SNS 더욱 가속
제품개념 (의)	브랜드, 명품, 사치의 시대	가성비, 실속, 가치의 시대
외식, 식품점 (식)	목 좋고 격식 높은 음식점 외식, 매장 (월마트 전세계 매장)	공유주방, 생산시설 공유센터 중심, 배달음식(아마존 배송)
주택, 사무실 (주)	대규모, 큰집, 단독사무실, 개인공간	중소규모, 작은 집, 공유사무실 등, 호텔링 사무공간
금융·증권 등 (돈)	전국 지점망, 객장, 매장 중심	전국지점 반 이상 축소, 온라인 공인인증서 개설, 가입
교통, 통신 등 (통)	여객항공, 가솔린 차, 데스크, 컴퓨터	화물항공, 전기차, 스마트폰
기업재무 보고 등	재무제표와 외부감사보고서	비재무정보와 ESG 인증 보고서

(안사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제공)

안사회계법인
02-829-7557

회계·경리·세무·재무·인사·노무·총무·법무·기획·재경(AnSe consulting)
경영관리 · 총무 outsourcing + secretarial 서비스 + 중소기업창업·보육·지원센터

안건조세정보
02-829-7575

주간 안사회계법인 재경저널

통권 1565호 / 주간 14호

2022. 4. 6. (수)

· 발행인: 이윤선
· 제작: (주) 안건조세정보
· 대표전화: (02) 829-7575
FAX: (02) 718-8565

목 차

❖ 회원가입 문의 안내

- 서울·수도권·경기·인천
전화: (02) 829 - 7575
팩스: (02) 718 - 8565
- 부산·경남
전화: (051) 642 - 3988
팩스: (051) 642 - 3989
- 대구·경북
전화: (053) 654 - 9761
팩스: (053) 627 - 1630
- 대전·충청
전화: (010) 3409 - 2427
팩스: (042) 526 - 1686
- 수원·안산
전화: (010) 5255 - 6116

- ❖ 매월 구독·자문료 5만원
온라인 입금계좌
- 우리은행
594 - 198993 - 13 - 001

**정회원(주간+월간 등)
월 구독료
5만원**

eAnSe.com의 차별화 특징

- ① 오늘 30분내 Q&A 전송
- ② 핵심내용 영문번역
- ③ 재경전반 동영상강의
- ④ 즉답(010-2672-2250)
- ⑤ 온라인 세무상담실
- ⑥ 모든 정보 통합검색
- ⑦ 마케팅 세무회계전략
- ⑧ CEO·CFO 경영에세이
- ⑨ 전담회계사 파견자문
- ⑩ 세무·회계·재경고문
- ⑪ 최고경영자의 세금전략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최고경영자 재경전략	시와 코로나19로 바뀌는 BC세계과 AC세상의 차이점	표지
C E O 에 세 이	CEO에게 용인술은 없다	2
세 무 · 회 계 상 담 자 문 (남들은 무슨 고민할까?)	- 매출취소 문의 - 상장주식을 기부받을 경우 기부금영수증 상 기부가액 문의 - 연수원 생활형숙박시설 등록시 검토할 세무적 문제	4 5
눈 에 맞 는 절 세 미 인	업무무관 부동산의 세무상 처리 방법	6
매 일 절 세 재 무 요 점	- 1주택자 비교세 요건 상황에 따른 양도소득세 변화 시뮬레이션 - 디지털세 필라 1·2 개요	8 9
직 장 인 Survival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10가지	10
최 신 판 례 예 규 (이런저런 유권해석)	- 퇴직급여 중간정산일 현재 내국법인의 임원이 속한 세대가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고, 해당 임원이 세대주로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 해당 임원에게 주택취득자금으로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손권에 산입할 수 있음 (서면법령법인-5117, 2021.09.17) - 대화용컵의 회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받는 보증금은 신용카드등사용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법령소득-3180, 2021.06.29)	11 12
세 정 뉴 스 와 해 설	코로나19로 결산차질, 자금 어려운 중소기업들 납기연장 신청 많아	15
마 케 팅 Tax consulting	무주택 세대주인 임원에게 주택취득자금으로 지급하는 퇴직금은 손금 인정됨	13
세 무 정 보	-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 재산은닉한 지능적 고액채납자 추적조사 실시	14 18
회 계 정 보	- 코로나19로 인한 사업보고서 등 제출지연 관련 제재 면제 심사결과 - 2022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 발표	31 34
노 무 정 보	- 고용노동부, 여행업 등 14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 및 택시운송업 신규 지정	42
세 무 환 율 정 보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33

CEO에게 용인술은 없다



이해익 원장 : 리즈경영컨설팅 대표컨설턴트·CEO칼럼니스트

- 한국CEO연구 포럼 연구위원장, 머니투데이에 CEO 에세이 연재
- (전)진로그룹 이사·캠브리지총괄전무, 한국능률협회 교수요원
-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기업평가위원장으로 활동
- (검임)한국팔기회고문, 한국표준협회 경영고문, 최고경영자 과정 출강
- 서울상대졸업 011-241-8558, haekirhee@hotmail.com

용인술(用人術)은 문자 그대로 사람을 쓰는 기술이다. 거기에는 사람을 도구라고 여기는 철학이 내재하고 있다. 그래서 용인술은 제왕의 것이다. 권위주의 시대의 것이다. 조폭두목의 것이다. 그러므로 당연히 사람을 사람 대접하지 않고 주인의 목적달성을 위한 도구로 여겼다. 또 사람 스스로도 그러려니하고 부지불식간에 노예화 되어갔다.

세상의 변화가 느리고 단순 반복적이고 주로 사지육신으로 하는 일이 주된 농경사회나 산업 사회에서는 사람을 도구로 여기는 일이 그리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세상이 바뀌었다. 일만년의 농경 사회에 큰 산이 무너진 것처럼 산업혁명이란 2-300년 변화도 엄청난 것이었다. 그러나 디지털 혁명이란 혜성이 날아와서 지구자체를 송두리채 뒤엎든 것과 같은 변화는 산업혁명의 그것에 비할 바가 아니다. 불과 몇십년의 충격적 진동은 인류역사를 근본적으로 뒤집는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

용인술은 무용지물이 됐다

이제 생산의 주요자원은 토지나 산업설비나 돈보다도 사람인 세상이 되었다. 따라서 사람과 함께하고 적절하게 일하도록 하는 문제가 과거 어느때보다 중요해진 것이다. 그런데 그제 용인술의 대상이었던 사람은 더 이상 긴요하지 않다. 단순반복적인 일에 절은 사람, 열심으로 박사 교수가 되었어도, 자격증이 많아도 앵무새처럼 흉내나 내고 베끼기나 하는 사람, 횡설수설 촛점을 흐리고 떠드는 사람 또 머릿수나 헤아리는데 이골난 화이트 칼라는 이제 중요인자가 아니다. 루치아노 베네통처럼 창조적인 사람, 스피버그처럼 무궁무진한 상상력의 소유자가 필요한 세상이 되었다.

그런데 아직도 상당수 어리석은 황제같은 오너나 권위주의에 향수를 느끼는 보스들과 조폭

의 두목은 노예같은 사람을 끼고 돌기 일쑤다. 고분고분하기 때문이다. 잔소리없이 시키는 일만 하기 때문에 부러먹기 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은 사람에게 노예나 도구 이상의 역량을 요구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오너나 두목은 답답하다. 더구나 도구처럼 부리고 도구이상 댓가도 지불치 않았다. 또 도구들조차 감히 보상과 대접에 그리 시비도 걸지 않았다. 알맹이는 오너나 두목이 편법을 쓰면서까지 송두리채 훑어 먹어도 괜찮았다. 그걸 당연시했고 도구들은 도와주기조차 했다. 그런 후 어찌다가 도구들에게 부스러기나 냄새 맡으라는 식이었다. 그러므로 그런 오너나 두목 밑에는 ‘쓸만한 사람’은 훑힐 떠난 후 노예나 남아있게 마련이다. 살아남아 보려고 도구들을 쫓아대 보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부하를 쫓아댈 일이 아니라 두목 스스로를 쫓아대거나 빠실 일이다. 그래서 부하보다 오너와 두목이 먼저 변해야 한다.

여인정신(與人精神, Partnership)이 중요하다

삼국지의 유비가 제갈량과 함께 하려고 노력한 삼고초려의 일화는 싸구려 용인술이 아니라 여인정신, 파트너십의 발현이다. GE의 잭 웰치가 그의 자서전에서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창조적이고 적극적인 좋은 파트너들과 함께 했었기에 성공적이었고 행복했다.” 파트너십을 토대로 한 CEO의 리더십을 증언한 것으로서 동서고금이 따로 없음을 보여준다. 그뿐이랴. 성공한 리더들에게는 위대한 이인자들이 파트너로 뭉을 다한 경우가 많다. 마이크로 소프트의 빌 게이츠에게는 스티브 발머와 공동창업자인 폴 앨런이 있고 마오쩌둥에게는 저우언라이가 있었다. 한국유리의 고 최태섭 회장과 신일고등학교 재단 이사장 고 이봉수 회장의 남다른 파트너십도 한국에서는 흔치 않은 귀한 사례다. 이들 모두 보스와 부하관계가 아닌 위대한 협력자 정신을 보여준 모범적 사례인 것이다.

피터 드러커의 지적처럼 프로페셔널, 즉 전문가 시대, 지식기반 사회를 살아가는 21세기는 여인정신 즉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한 리더십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새삼 명심해야겠다.

매출취소 문의

Q 당사는 A사로 매출했던 아이템을 20년 11월, 21년 5월에 돌려받았고, 당시 수입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습니다. 현재까지 대금은 받지않고 미수채권으로 남아있는 상태이며, 매출 취소 회계처리 및 부가세 신고에 반영하지 않은 상태인데, 22년 1월에 매출 취소 및 부가세 수정신고 한다면 가산세가 발생되는지 문의드립니다.

A 질의가 명확하지 않는데, 수출물품의 하자 등으로 반입되는 경우 반입일이 속하는 예정신고나 확정신고시 공급가액 차감하여 신고반영하면 되므로, 귀사의 경우도 2020년2기확정, 2021년1기확정시기에 반입되었으므로 해당기간에 반영하여 신고하였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미 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해당기간분에 대해 수정신고하시면 됩니다.

♣ 서면3탐-586, 2005.05.02

1.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한 후 하자로 인하여 당해 수출한 재화를 반입하면서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반입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서 반입재화의 공급가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며, 당해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반입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과 유사한 질의회신문(서삼46015-11963, 2003.12.6. ; 부가22601-1604, 1990.12.6. ; 부가22601-243, 1990.2.28.)을 참고하기 바람.

상장주식을 기부받을 경우 기부금영수증 상 기부가액 문의

Q 본 원은 기부금 단체로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수령 중에 있습니다. 한 개인이 법정기부금 목적으로 지분을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인이 과거 취득한 상장주식을 본원에 기부하고자 하는데, 이때 기부자에게 발급할 기부금영수증에 기부가액을 어떤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기부자가 취득당시 한주에 5만원으로 취득하였으나, 기부시점의 시세가 한주당

초보자코너

A 2만5천원 일 경우, 기부자가 취득할 당시의 금액인 5만원 기준으로 계산을 해야할 지 아니면 기부당시의 시가인 2만5천원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공익법인 등이 상장주식을 기부받은 경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2항제5의3호 규정에 따라 기부한 자의 기부당시 장부가액으로 하면 됩니다.

♣ 법인, 법인세과-522, 2011.07.28

공익법인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해당하는 지정기부금단체가 상장주식을 기부받은 경우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5의3호 내지 제6호에 따른 가액으로 하되, 기부금영수증상 기부금액은 기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따른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시가에 의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시가를 적용하는 것임.

연수원 생활형숙박시설 등록시 검토할 세무적 문제

Q 저희 회사는 비영리법인으로서 고유사업과 수익사업이 있으며, 수익사업안에서도 면세사업(도서) 및 수익사업(연수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수원은 수익사업으로 숙박시설 및 카페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매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업태는 서비스업, 음식점업/종목은 교육연구/카페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사업자등록상에 생활형숙박시설로 등록을 하려고 할 때, 업태 및 종목은 어떤종류로 할 것이며, 기타 회계세무상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A 생활형숙박시설의 경우 일반임대사업(숙박업)으로 등록하시면 되며, 해당 사업에 대한 사업자등록 자체에 별다른 세무회계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업무무관 부동산의 세무상 처리 방법

상담실 백종훈 차장

법인이 비업무용 부동산 및 동산을 취득·보유하고 있는 경우 취득비용, 지급이자는 물론 유지관리비 등도 손금불산입된다.

이렇게 비업무용 자산을 취득하고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손금불산입하는 이유는 자산의 취득 등을 위한 타인자본의 유입을 막아 법인의 재무구조를 건전화시킴과 동시에 부동산 투기거래를 방지하고 기업자금을 투기자금에서 생산자금으로 유도하기 위함이다. 어떤 경우에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되어 손금불산입이 되는지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유예기간동안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으로서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데 유예기간내에는 비업무용으로 판정하지 않는다.

유예기간이란 법인이 부동산을 사자마자 즉시 업무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업무용으로 사용하기까지의 어느 정도의 준비기간을 법에서 인정하여준 것이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는 일반부동산의 경우 취득일부터 2년, 건축물·시설물 신축용토지는 취득일부터 5년,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일부터 5년, 공장신축용 토지의 경우는 당초 사업계획서상 공장건설계획기간 전부를 각각의 유예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각 부동산별 유예기간을 경과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유예기간의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어 지급이자 등 관련비용에 대한 손금불산입을 계산하게 된다.

하지만 부동산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계속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취득일부터 소급하여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보아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을 소급적용한다.

유예기간내라도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양도한 경우

법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중 유예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는 비업무용 토지로 판정되지 않지만, 유예기간내라도 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본다.

따라서 당초의 취득일부터 소급하여 업무무관 자산으로 판정하며, 소급된 취득일부터 각 사업연도별로 발생한 경비비용처리액·유지비·수선비 및 관리비 등이 손금불산입 처리되며, 과거 유예기간동안의 손금처리사항을 손금불산입하여 과거 법인세 신고내용을 수정해야 한다.

♣ 서이46012-11749, 2003. 10. 09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장용 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당해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동 부지 중 일부를 유예기간 내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특별한 사유에 의해 사용하지 못한 경우는 업무용으로 인정

유예기간내에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으로 업무무관 부동산의 범주에 속한다 하더라도 특수한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당해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 등에는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건축법상 또는 행정지도에 의한 건축허가제한, 문화재보호구역내 부동산, 사도법상의 도로, 소송계류중 합병·분할에 따른 소유권 이전 및 매각의 어려움 등 기타의 불가피하거나 경제형편상 어쩔 수 없는 사유 등을 충족하는 경우는 당해 부동산의 보유 현황이나 내용이 어떻다 하더라도 업무무관으로 보지 않는다.

♣ 서이-1804, 2005. 11. 09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도시계획법」(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설치가 금지 또는 제한되어 사용권이 제한된 상태에서 보유중인 토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 각목 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에 해당하여 업무무관부동산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질의관련 토지를 취득한 이후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이 되었는지, 질의와 같이 15년간 관련법률에 의하여 규제가 적용되었는지는 취득내용 및 관련법률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 안건조세총서, 기업경영회계·세무, 법인세법상세해설서
- 경제신문자료와 공공기관발표자료 등

월

1주택자 비과세 요건 상향에 따른 양도소득세 변화 시뮬레이션

취득가액 7억원, 양도가액 15억원

구분	기 존(9억원)	변경(12억원)
양도차익	3억2000만원	1억6000만원
기본공제	250만원	250만원
과세표준	3억1750만원	1억5750만원
산출세액	1억160만원	4045만원
지방세	1016만원	404만5000원
총 납부세액	1억176만원	4449만5000원

※ 2년 보유, 2년거주 전체, 필요경비 0원 계산

화

연금저축 상품별 특징

상품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운용주체	은행	자산운용사	보험사
납입 방식	자유적립식		정기납입
적용 금리	실적배당		공시이율
연금수령 방식	확정기간형		확정기간형 종신형(생명보험사 한정)
원금보장	비보장 (2017년까지 가입한 상품은 보장 가능)	비보장	보장
예금자보호	보호	비보호	보호



디지털세 필라 1 · 2 개요

디지털세	필라1	연결매출 200억유로(27조) 이상 기업의 영업이익률 10% 이상 초과이익의 25%에 대한 과세권을 매출 발생국가에 배분
	필라2	연결매출 7.5억유로(1조원) 이상 기업에 대해 글로벌 최저한세율을 15%로 규정
적용시기	2023년	
확대여부	7년간 적용 후 2030년 매출 100억유로 이상으로 확대	
국내 적용기업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은 추후 실적과 적용대상 확대 등에 따라 추가가능성	
이중과세 논란	기존 디지털서비스세 및 유사과세 폐지, 기재부 "이중과세 방지조항 마련" 외국납세공제 조항 준용 전망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세액공제 사후관리

- ① (대상) 국가전략기술(신성장) 시설이 일반기술 제품도 생산하는 경우
- ② (기간) 투자완료일부터 다음 3개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 (예) '21. 9. 15. 시설투자 완료시 : '21. 9. 15. ~ '24. 12. 31.
- ③ (생산비중) 총 생산량 중 국가전략기술 제품 누적생산량 비중이 50%(주된 용도 판정기준) 미달시 공제세액 납부
- ④ (납부세액) 공제율 차액(국가전략기술 시설 공제세액 - 일반시설 공제세액) + 이자상당액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10가지

- 1.상쾌한 기분으로 깨어나라
깨어있을 때 행복하려면 잠자리에서 충분한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 2.사랑을 찾아라
- 3.건강을 유지하라
인체, 특히 두뇌는 신체적으로 건강할때 제기능을 가장 잘 발휘한다.
- 4.목표를 가져라
가장 기본적인 목표라도 일단 세우고나면 그것을 달성하는 데 전념할수 있을 것이다.
- 5.보급자리를 꾸며라
집, 침실, 심지어 화장실이라도 긴장을 풀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라.
- 6.자신의 페이스를 지켜라
게으름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 많은 부담을 지는 일은 가급적 피해야 한다.
- 7.대접할 계획을 세워라
어떤 특정한 일을 달성할 때마다 보상으로 스스로 자신에게 대접하는 법을 익히자.
- 8.선물을 주어라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자신이 행복해지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이다.
- 9.관대해져라
다른 사람들의 걱정거리에 동정을 표하되, 그들의 슬픔에 물들지 않도록 노력하라.
- 10.놀아라
우리는 아이이기를 멈추는 순간 노는 것을 잊어버린다.

최신 판례 예규

Marketing Tax consulting

무주택 세대주인 임원에게 주택취득자금으로 지급하는 퇴직금은 손금 인정됨

퇴직급여 중간정산일 현재 내국법인의 임원이 속한 세대가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고, 해당 임원이 세대주로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 해당 임원에게 주택취득자금으로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서면법령법인-5117, 2021.09.17

질 의

- A법인의 임원은 주택 취득자금에 사용하고자 퇴직금 중간정산을 검토하고 있음
- 해당 임원의 세대는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였고, 임원의 배우자가 세대주였으나 20xx년 x월 x일 임원이 세대주로 등재됨
- A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제2항제5호에 따라 퇴직급여 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해당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예정이며,
 - 임원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현실적인 퇴직의 범위등)제3항제1호에 따라 중간정산일부터 3개월 내에 주택을 취득할 예정임

질의내용

- 퇴직급여 중간정산일 현재 내국법인의 임원이 속한 세대가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고, 해당 임원이 세대주로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내국법인이 해당 임원에게 주택취득자금으로 지급하는 퇴직급여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제5호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제3항제1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퇴직급여 중간정산일 현재 내국법인의 임원이 속한 세대가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고, 해당 임원이 세대주로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 해당 임원에게 주택취득자금으로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제5호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제3항제1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업법인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직원이 해외현지법인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경우, 해당 직원은 기업법인의 정규직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으며, 해당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도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서면법령재산-2053, 2021.09.30

질 의

- '20년 부친 사망으로 부친이 경영하던 가업(A법인, 덕트 제조업)을 상속받았으며,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예정임
- A법인은 '19년 해외현지법인(B법인)을 설립함(A법인 출자금 100%)
- A법인은 B법인 설립 직후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국내에서 근무하던 A법인 직원 갑을 B법인에 파견함
- 근로자 갑은 가업과 관련 없는 B법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근로자 갑의 급여 및 4대보험은 A법인이 부담하고 있음

질의내용

-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시 기업법인의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직원 및 해당 직원에 대한 급여가 상속세및증여세법§18⑥(1)라목 및 마목에 따른 정규직근로자 및 총급여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 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기업(이하 "가업법인"이라 함)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직원이 가업법인의 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해외현지법인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경우, 해당 직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6항제1호라목1)에 따른 정규직근로자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가업법인이 해당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도 같은 법 제18조제6항제1호라목2)에 따른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회용컵의 회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받는 보증금은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법령소득-3180, 2021.06.29

질 의

- 질의법인은 일회용 컵 사용량 감소와 환경보호를 위해 '21.3.16. AAA 및 BBB와 DDD 프로젝트 업무 제휴 계약을 체결함
- DDD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매장에서 음료를 주문하는 고객은, 음료 주문시 음료대금과 별도로 다회용컵 1개당 1천원을 지불하고, 다회용 컵을 반납기에 반납하는 경우 보증금을 해피해빗 앱을 통한 적립금 또는 현금으로 반환 받을 수 있고, 미환급 보증금은 프로젝트 1차 런칭일로부터 6개월 후부터 매월 말 기준 미환급금액의 70%범위 내에서 다회용컵, 반납기 제작 등에 사용 예정임

질의내용

- 음료대금과 함께 다회용컵 보증금을 신용카드로 일괄 결제한 경우 다회용 컵보증금이 조세특례제한법§126의2①의 소득공제 해당 여부

회 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중 다회용컵의 회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받는 보증금은 동항에 따른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주자 판정은 거주기간, 직업, 자산,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서면국제세원-3451, 2021.07.20

질 의

- 신청인은 2010년부터 현재까지 스위스에 거주하면서 유럽번리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2020년 '스위스에 계속하여 10년간 거주'의 요건을 충족하여 영주권 신청자격 획득 및 신청절차를 준비 중임
 - 신청인은 국내주식 및 예금계좌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 10년간 1년 중 183일 이상 국내에서 거주한 적이 없음
 - 신청인의 배우자는 2010년 스위스로 함께 출국 하였으나, 2017년 부친의 병간호를 위해 자녀와 함께 국내에 입국하여 부친의 집에서 함께 거주
- 질의요지
- 거주자 여부 및 거주자로 되는 시기

회 신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비거주자가 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각 호의 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중소기업 소득세·법인세 감면 5년 연장 발의

코로나 19로 인한 중소기업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세 금 감면 혜택을 5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김포시갑)은 30일 중소기업 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기한을 2027년 말까지 5년 연 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중소기업 중 작물재배업·축산업·어업·제조업·건설업· 연구개발업 등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감면은 올해 말로 종료 예정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2020년 중소기업 세제·세정 이용 및 애로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세지원제도를 활용한 중소기업의 87.8%가 세금감면이 경영에 도움이 된다고 답 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보다 효과적인 세제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우리 경제를 견인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기업들이 꼽은 코로나 세법... 고용 및 R&D 세액공제

글로벌 회계·컨설팅 법인 EY한영(대표이사 박용근)은 최근 '2022 EY한영 개정세법 세미나' 참석자들을 대상으 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해 확정된 정부 세법개정에 대한 기업 당사자들의 평가다.

설문에서는 이번 개정세법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 고 조세제도를 합리화하는 데 적절했다는 답변이 61%에 달했다.

설문 참여자 총 138명 중 50% 이상은 올해 세법개정이 경제회복 지원, 선도형 경제 전환, 상생공정 기반 강화, 과 세형평 제고 등 정책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 다고 평가했다.

응답자의 총 65%는 고용 세액공제의 한도, 적용기한 등 에 가장 관심이 있다고 답했다. 고용 관련 세액공제는 경 제회복 지원 및 선도형 경제 전환을 위한 세법개정 내용 중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다.

정부는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증대세액공 제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4년 말까지 연장했다. 또한 청년 고용에 따른 기업의 초기 부 담 완화를 위해서 다양한 고용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음으로 관심 많은 분야는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 천기술 R&D 세액공제였다. 응답자의 38%가 꼽았다.

신성장원천기술의 경우 R&D 비용의 20~40%, 시설투자 비용의 3~12%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반도체, 배터리, 백신 등 지정된 국가전략기술의 경우 R&D 비용의 30~50%, 시 설투자의 6~16%가 가능하다.

다만, 응답자의 39%는 '선공제 후추징'에 대한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요건이 복잡해 세액공제가 적용된 이후 세 무조사 시에 추징될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두고 심사를 받은 기업에 대한 가산세 리스크 등을 해소해 주고 있다.

유류세 20→30% 인하 확대 검토... 휘발유값 얼마나 내려갈까?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27일 기획재정부가 유류 세 인하 연장 방안 등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획 재정부는 향후 국제유가 동향에 따라 결정해야 하는 사안 인 만큼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유류세 인하 검토 방안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 태로 국제 유가 급등에다가 원·달러 환율까지 뛰면서 국 내 기름값이 크게 증가한 데에 따른 조치로 보여진다.

만약 인하율이 30%로 인하된다면, 휘발유 기준으로 리 터당 82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발생한다. 휘발유 1리터당 세금은 574원 내간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현재 추가 인하 여부, 인하 폭 및 물가관계장관회의 개최 여부를 포함한 검토 일정 등은 결 정된 바 없다"며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유류세 20% 인하 조치를 7월 말까지 연장 하기로 했지만, 법적으로는 유류세 인하는 최대30%까지 가능하다.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 국세청, 2022. 4

- 법인의 소득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가 오는 4월부터 한 달간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 * 지방세로 통상 국세인 법인세의 10% 수준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법인 99.9만여개*(사업연도가 ' 21.12.31. 종료되는 법인, 전체 법인의 95%)의 2021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을 오는 4월 1일 (금)부터 5월 2일(월)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 * ('20년) 84.9만 개 → ('21년) 92.1만 개 → ('22년) 99.9만 개, 전년대비 7.8만개 ↑
- 법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이 소재한 시·군·구청 방문 또는 우편신고할 수 있다.
 - 사업장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경우, 법인은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이 위치한 지자체에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 \text{안분율} = \left(\frac{\text{사업장 관할 지자체 내 종업원수}}{\text{법인의 총 종업원 수}} + \frac{\text{사업장 관할 지자체 내 건축물 연면적}}{\text{법인의 총 건축물 연면적}} \right) \div 2$$

- 행안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코로나19로 인한 운영시간 제한이나 최근 발생한 동해안 산불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4월 → 7월) 직권 연장하기로 했다.

구분		세정지원 대상
운영시간 제한 업종*	1그룹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2그룹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3그룹·기타	평생직업교육학원, PC방, 오락실·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영화관·공연장
고용위기지역		(경남)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전북) 군산시, (전남) 영암군, 목포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위기지역 및 (전남) 해남군
동해안 산불 관련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		(경북) 울진군, (강원)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 다만, 직권연장 대상 기업이더라도 납부기한에 한하여 연장하므로 신고 기한 내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 아울러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있어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별도 신청을 통해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지방세기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부터 제8조, 제8조의2
※ 지원대상은 약 2.9만여개('21년 법인지방소득세 납부액 기준, 약 392억원) 예상

- 특히, 올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시에는 중소기업 소급공제 대상기간이 한시적으로 확대(직전
1년 → 직전 2년)된다.
- 통상 중소기업의 경우 결손이 발생하면 지난해 낸 세금에서 환급해주고 있으나(결손금 소급
공제), 「지방세법」 개정('21.12.29.)에 따라 지난해뿐만 아니라 그 전년도에 납부한 세금
에서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 이는 지난해 납부한 세금이 없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환급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라고 행
안부는 설명했다.
- 행안부는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 동안 납세지원을 위해서 「정부민원안내 콜센터
(110)」 외에도 신고기간 동안 10여명의 상담원을 갖춘 전담 콜센터*를 추가 운영할 계획이
다.
- 또한, 위택스에 별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페이지를 개설하여 위택스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
할 계획이다.
* 법인지방소득세 위택스 신고 전담 콜센터 02-2031-9672
-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코로나19 및 동해안 산불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
한 지원을 강화하고 납세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참고 - 지방소득세 (개인·법인) 개요

□ 개관

- 개인 및 법인의 소득에 대해 특·광역시, 시·군에서 과세하는 지방세로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로 구분
 - (개인) 종합·양도·퇴직소득에 과세, 세수규모는 9.5조원('20년)
 - (법인) 사업·청산소득 등에 과세, 세수규모는 7.4조원('20년)

□ 납세의무자 및 과세범위

- 소득세 및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개인 및 법인)

구분	거주자(국내에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 내국법인	비거주자, 외국법인
과세범위	국내·외 원천소득	국내 원천소득

□ 과세기간

- (개인)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소득세법」 제5조)
- (법인) 법령·정관 상 1년 이내의 1 회계기간 (「법인세법」 제6조)
 - ※ 전체 법인의 약 95%가 12월 결산법인(사업연도: 1.1. ~ 12.31.)에 해당

□ 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표준		소득세·법인세 과세표준과 동일	
세 율	개인지방소득세	1,200만원 이하	0.6%
		1,200만원 ~ 4,600만원	1.5%
		4,600만원 ~ 8,800만원	2.4%
		8,800만원 ~ 1억5천만원	3.5%
		1억5천만원 ~ 3억원	3.8%
		3억원 ~ 5억원	4.0%
		5억원 ~ 10억원	4.2%
		10억원 초과	4.5%
	법인지방소득세	2억원 이하	1.0%
		2억원 ~ 200억원	2.0%
		200억원 ~ 3천억원	2.2%
		3천억원 초과	2.5%
	특별징수	소득세·법인세액의 10%	
탄력세율	지자체별로 세율의 50% 가감 적용 가능		

- 세액공제 및 감면
 - (개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에 따라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세액공제·감면되는 금액의 10%를 공제·감면
 - (법인) 세액공제·감면 규정 없음

- 납세지(해당 특·광역시, 시·군)
 - (개인) 원칙적으로 주소지이며, 특별징수 납세지는 종류별로 따로 규정

< 소득종류별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납세지 >

구 분	근로·퇴직소득	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	건강보험공단 지급 사업소득
납세지	근무지	소득 지급지 (예외) 본점 지급 복권당첨금 : 복권 판매지	주소지	사업장 소재지

- (법인) 각 사업장 소재지(종업원 수, 건축물 연면적 1:1 기준 안분)
 -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에 안분하여 신고·납부해야 함

<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계산식 >

$$\left[\left(\frac{\text{관할 지방자치단체 안 종업원수}}{\text{법인의 총 종업원수}} \right) + \left(\frac{\text{관할 지방자치단체 안 건축물 연면적}}{\text{법인의 총 건축물 연면적}} \right) \right] \div 2$$

- 신고납부 방법
 - 관할 지자체에 신고·납부
 - ※ 개인지방소득세는 세무서(지자체 공무원 파견)에서도 신고·납부 가능

개 인	근로소득	매월 특별징수(원천징수) 후 다음 해 2월에 연말정산 ※ 근로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이 없는 경우 별도 종합소득 신고 불필요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납부
	양도소득	양도소득 신고기간에 2개월을 더한 날까지 예정신고·납부 후 다음 해 7월 말까지 확정신고·납부
법 인	각사업연도소 득 등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법인세는 3개월) 이내 신고·납부
	청산소득	해산 시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납부

재산은닉한 지능적 고액체납자 추적조사 실시

- 국세청, 2022. 4

-
-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체납전담조직과 추적조사 체계를 재정비하는 등 악의적·지능적 고액체납자에 엄정 대응하고 있습니다.4
 - 특히, 고액·상습체납자의 새롭고 기발한 재산은닉행위에 대한 정보수집과 기획분석을 확대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더욱 정교하게 개선하는 등 현장 중심 재산추적조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고액·상습체납자 584명(체납액 3,361억 원)에 대해 추적조사를 착수하였으며,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입 명차 리스] 세계 3대 명차로 유명한 고가의 승용차를 리스·이용하는 유사수산업체, 부동산 시행사 등 체납자(90명)
 - [재산 편법 이전] 강제징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배우자 및 자녀 등에게 재산을 편법 이전한 체납자(196명)
 - [호화생활 영위] 재산·사업내역 및 생활실태 등 종합분석 결과 호화생활을 영위하거나 타인명의 위장사업 등 고의적 체납자(298명)

 - 체납자 은닉재산 추적에 노력한 결과 2021년에 2조 5,564억 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확보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국세청은 납세의무를 회피하여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 조세행정을 엄정히 집행하는 한편,
 - 세금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매각의 유예 등의 세정 지원을 최대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

1 재산을 은닉한 지능적 고액체납자 584명 추적조사 착수

-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올해부터 지방청에 체납추적관리팀을 신설하고, 세무서에는 체납추적 전담반을 시범 운영하는 등 조직·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하여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또한, 신종 재산은닉행위에 대한 정보수집을 강화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생활실태 분석으로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특정하고 수색을 실시하는 등 추적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 이번 추적조사는 최고급 수입 명차를 리스·이용하는 고액체납자, 배우자 등에게 재산을 편법 이전한 체납자, 호화생활을 영위하거나 타인 명의 위장사업 등 강제징수를 회피한 혐의가 있는 고액체납자 584명(체납액 3,361억 원)에 대해
 - 체납자, 배우자 및 특수관계인의 재산·사업 내역과 소득·지출 내역 및 생활실태 등을 종합 분석하여 추적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 이번 추적조사의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참고 붙임1)

합 계	<유형1> 수입 명차 리스	<유형2> 재산 편법 이전	<유형3> 호화생활 영위 등 (빅데이터 분석)
584명	90명	196명	298명

- (유형1: 수입 명차 리스) 고액의 세금을 미납한 상태에서 최고급 수입 명차를 리스해서 사용하는 등 재산을 은닉한 혐의자 90명

[사례 1] 서민을 올리는 유사수신업체 사주의 수입 명차 리스

- ◆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금을 모집한 A 법인은 투자수익금을 지급하고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무담부하여 체납이 발생한 상태에서 폐업
- ◆ 법인의 사주일가는 수입명차를 법인 명의로 리스하여 사용하고 고급주택에서 호화생활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리스보증금을 압류하고, 법인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에 대하여 추적조사 착수



[사례 2] 허위·과장 광고로 분양한 시행사의 수입 명차 편법 리스 이용

- ◆ 허위·과장 광고로 수분양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부동산 시행사 B 법인은 고액의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
- ◆ 법인 대표가 최고급 수입 명차를 체납법인 명의로 리스하여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리스 보증금을 압류하고, 법인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에 대하여 추적조사 착수

○ (유형2: 재산 편법 이전) 압류 등 강제징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체납자 본인 명의 재산을 배우자 및 자녀 등에게 편법이전한 혐의자 196명

[사례 3] 상속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하여 강제징수 회피한 사채업자

- ◆ 사채업자 C는 고리의 이자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고액의 체납이 발생하였으나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을 압류 전 자녀에게 사전증여
- ◆ 추적조사에 착수하여 강제징수 회피를 위한 증여 및 사해행위를 확인하고 자녀 소유 부동산 가처분 및 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

[사례 4] 회사명의 연금보험을 대표이사 배우자 명의로 이전한 법인

- ◆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D 법인은 법인세 등을 무납부하여 고액의 체납 발생한 상태에서 폐업
- ◆ 법인 명의로 계약한 연금보험 계약을 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에게 이전하여 강제징수 회피한 혐의에 대해 추적조사 착수하여 배우자 소유 부동산 가압류 및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

○ (유형3: 호화생활 영위 등) 재산·사업내역 및 생활실태 등 빅데이터 분석결과 호화생활을 영위하거나, 타인명의 위장사업 등 고의적·지능적으로 강제징수를 회피하고 있는 혐의자 298명

[사례 5] 위장 이혼한 배우자의 집에서 호화생활하는 체납자

- ◆ 고가의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체납한 땅부자 E는 본인의 부동산을 친인척에게 명의신탁하여 강제징수 회피
- ◆ 체납자 및 친인척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혼한 배우자의 주소지에 실거주하는 것을 확인한 후 가택수색 등 추적조사 착수

[사례 6] 대표자 자녀 명의로 유사 법인 설립하여 강제징수 회피

- ◆ 도매업을 영위하는 F 법인은 매출누락으로 부가세 등 체납이 계속 발생하자 대표이사의 자녀를 대표로 하는 동종 업종의 G 법인을 설립하여 거래처를 이전하는 등 강제징수 회피
- ◆ 빅데이터를 통한 동종업종, 동일장소, 거래처 일치 등의 명의위장 혐의자로 분석되어 추적조사 착수

- 추적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여 환수하겠습니다
 - 아울러, 추적조사 결과 악의적으로 체납처분을 면탈한 경우 체납자 및 그 방조자까지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하여 형사 처벌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2 재산추적조사 성과 및 사례

가. 재산추적조사 성과

- 2021년에는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고액채납자 등에 대한 추적·징수 활동으로 2조 5,564억 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확보하였습니다.
 - * 2021년 추적조사 실적: 징수 15,709억 원, 채권확보 9,855억 원
 - 또한, 지난해에는 은닉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834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366명을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고발하는 등 법적 대응도 강화하였습니다.

나. 주요 추적조사 사례

-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악의적 고액채납자에 대한 수색으로 체납액을 징수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색사례 ① 베란다 향아리 속에 숨긴 미화 7만 달러

- 부동산 양도대금 일부를 외화로 환전하여 은닉하고 강제징수회피
- 체납자의 주소지에 잠복·대기하고 체납자가 외출을 위해 현관문 개문하였을 때 수색 착수
 - 베란다 잡동사니에 숨겨놓은 향아리 안 검은 비닐봉지에서 외화다발 발견(신권 1백 달러 700장)하여 현금징수



수색사례 ② 자녀명의 주택의 옷장 등에 은닉한 외화·현금 8억원 압류

- 주식 양도대금을 외화, 현금으로 인출(400회)하고 자녀 명의 전원주택에 은닉하여 강제 징수 회피(금융거래내역 분석)
- 체납자의 주거래 은행 등에서 잠복·미행을 통해 체납자가 자녀 명의 전원주택에 실거주하는 것을 확인
 - 실거주지·주소지·사업장을 동시 수색하여 8억 원* 현금징수
 - * 1백 달러 3,072장, 5만 원권 3,787장, 1만 원권 12,618장 등

수색사례 ③ 고가주택 거주 백화점 VIP 체납자 순금 50돈, 상품권 등 압류

- 강남 소재 배우자 명의 고가주택 거주, 운전기사를 고용하는 등 호화생활 영위하며 강제 징수 회피
- 생활 실태 등 빅데이터 분석으로 실거주지를 강남 소재 배우자 소유 고가주택으로 특정, 잠복을 통해 호화 생활 등 확인
 - 수색에 착수하였으나 체납자의 배우자는 수색을 거부하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였고, 체납자를 설득하여 금고에서 순금 50돈, 상품권 등 압류

3

향후 추진방향

가.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 적극적 활용

- 체납자의 재산은닉은 은밀히 이루어져 가까운 사람이 아니면 알기 어려우므로 국민들의 자발적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이를 위해 국세청에서는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를 (최대 포상금액 30억 원) 운영하고 있습니다.

<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방법 >

- 인터넷: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 국민소통 >> 가이드맵 >> 고액상습체납자 은닉재산신고
- 전 화: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

<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률 >	
징수금액	지급률
5천만 원 미만	-
5천만 원 이상 5억 원 이하	100분의 20
5억 원 초과 20억 원 이하	1억 원 + 5억 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5
2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3억 2천 5백만 원 + 20억 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0
30억 원 초과	4억 2천 5백만 원 + 30억 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5

- 국세청 누리집*(인터넷, 모바일) 등에 공개되어 있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참고하여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알고 있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립니다.

* 국세청 누리집에서 지역별·업종별로 시각화된 공개자료를 쉽게 확인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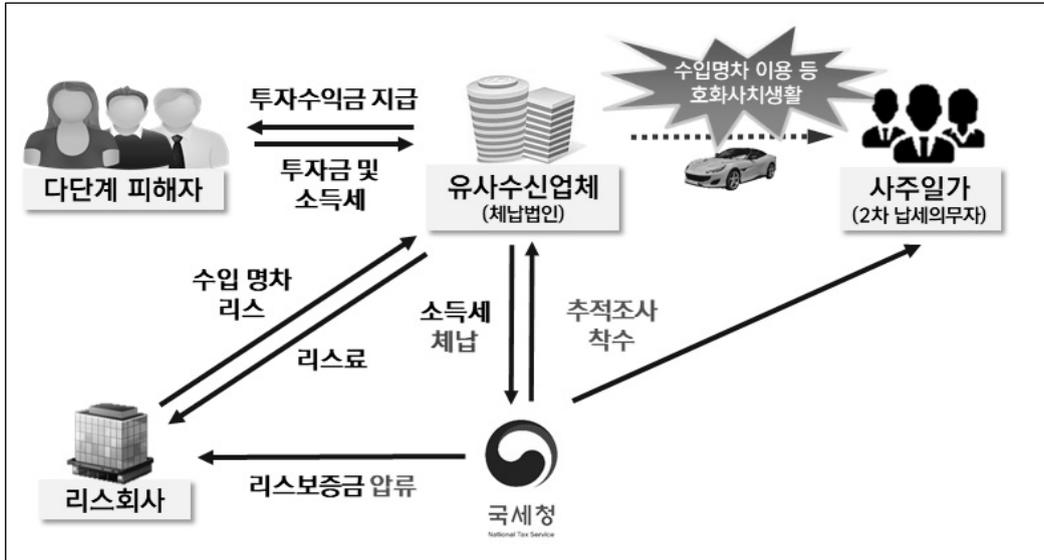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확인방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공개 >> 고액상습체납자 등 명단공개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공개 및 전체공개 / 지도공개 / 업종별 공개(법인) ■ 모바일: 모바일 국세청(어플) >> 국세청 모바일 홈페이지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바로가기)

나. 향후 계획

- 앞으로도 국세청은 납세의무를 회피하여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조세 행정을 엄정히 집행함으로써,
 - 공정한 세법 질서를 확립하고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납세자가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다만, 코로나19 지속 등으로 세금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등의 연장, 압류·매각의 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였으나 일시적인 자금경색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납세자에 대하여는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세정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붙임 1 - 추적조사 유형별 선정사례

사례 1 서민을 울리는 유사수신탁체 사주의 수입 명차 리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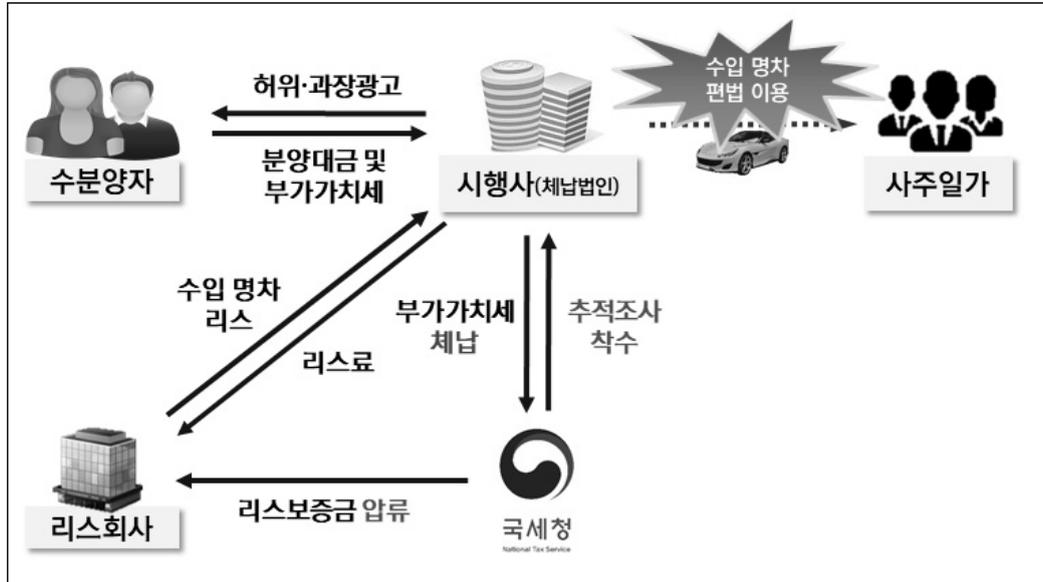
□ 체납 및 재산은닉 현황

-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자 수천 명으로부터 투자를 받은 A 법인은 투자 수익금 등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무납부하여 체납이 발생한 상태에서 폐업함
- B법인 사주일가는 수입명차를 법인 명의로 리스하여 사용하고 고급주택에서 호화생활을 하고 있음

□ 체납추적조사 방향

- 리스회사에 예치된 리스보증금에 대해 압류하고, 대표이사에게 제2차 납세의무 지정하는 한편
- 경제적 연관 관계가 있는 대표이사 등을 대상으로 법인자금 유출 등 재산을 은닉한 혐의에 대해 추적조사 착수

사례 2 허위·과장 광고로 분양한 시행사의 수입 명차 편법 리스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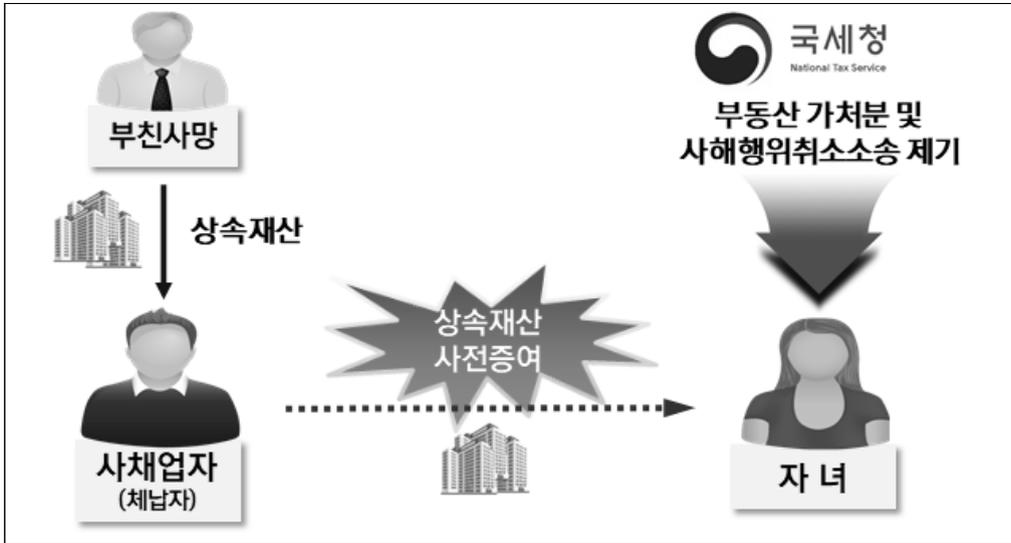
□ 체납 및 재산은닉 현황

-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상가 등 대규모 건축물을 분양하여 수분양자 등에게 피해를 입힌 시행사 B는 부가가치세 등 고액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체납하고 있음
- 시행사 B는 고가의 수입 명차를 리스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 구매하여 대주주 등 사주 일가 사용

□ 체납추적조사 방향

- 리스회사에 예치된 리스보증금에 대해 압류조치하고, 실사주 등 관련인이 체납법인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에 대하여 추적조사 착수

사례 3 상속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하여 강제징수 회피한 사채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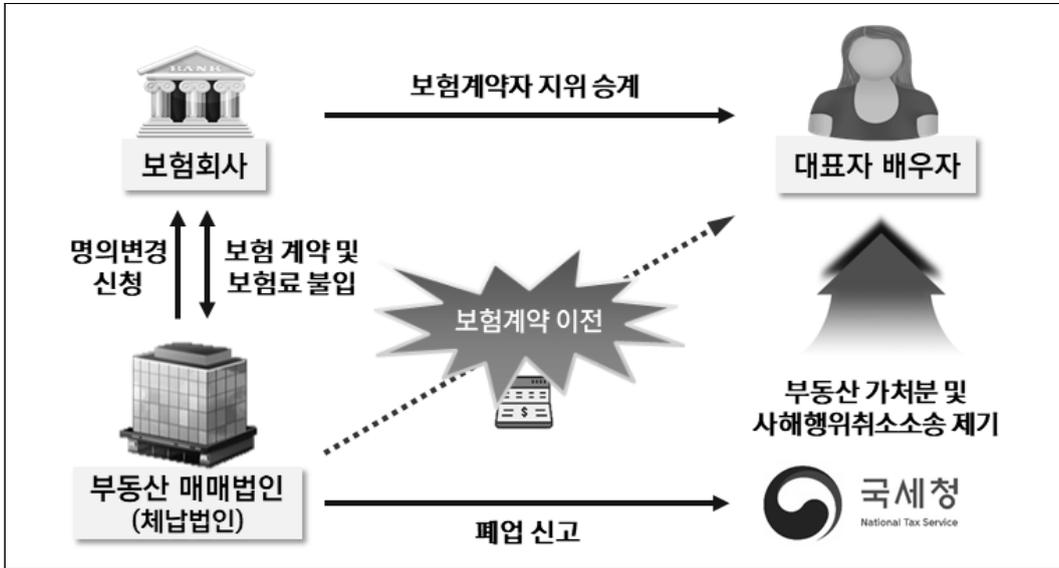
□ 체납 및 재산은닉 현황

- 사채업자 C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등에게 돈을 빌려주고 발생한 고리의 이자소득(3년간 원금의 150%)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세무조사를 받고 고액의 체납 발생
- 압류 등 강제징수를 회피하기 위해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을 압류 전에 자녀에게 사전 증여

□ 체납추적조사 방향

- 추적조사를 착수하여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요건 등을 검토하여 강제징수 회피를 위한 증여 및 사해행위를 확인
 - 자녀 소유 부동산에 대한 법원의 가치분 결정을 받아 재산을 보전한 후 자녀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 제기

사례 4 회사명의 연금보험을 대표이사 배우자 명의로 이전한 법인



- 체납 및 재산은닉 현황
 -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D법인은 부가가치세,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나 무납부하고 폐업하여 체납이 발생
 - 체납 발생 전 법인 명의로 계약하여 불입하던 종신연금보험 계약을 법인 대표자의 배우자에게 이전하여 강제징수 회피
- 체납추적조사 방향
 - 추적조사 착수 후 D법인과 대표자 배우자간 금융거래내역 분석등을 통해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요건 등 확인
 - 대표 배우자 소유의 부동산* 등에 대해 가압류하여 재산을 보전한 후 사해행위취소 소송 제기하고 고발 등 범칙처분 검토
 - * 보험계약 변경 후 보험료 추가 납입 등으로 보험계약의 원상회복이 불가하여 가액배상 청구

사례 5 위장 이혼한 배우자의 집에서 호화생활하는 체납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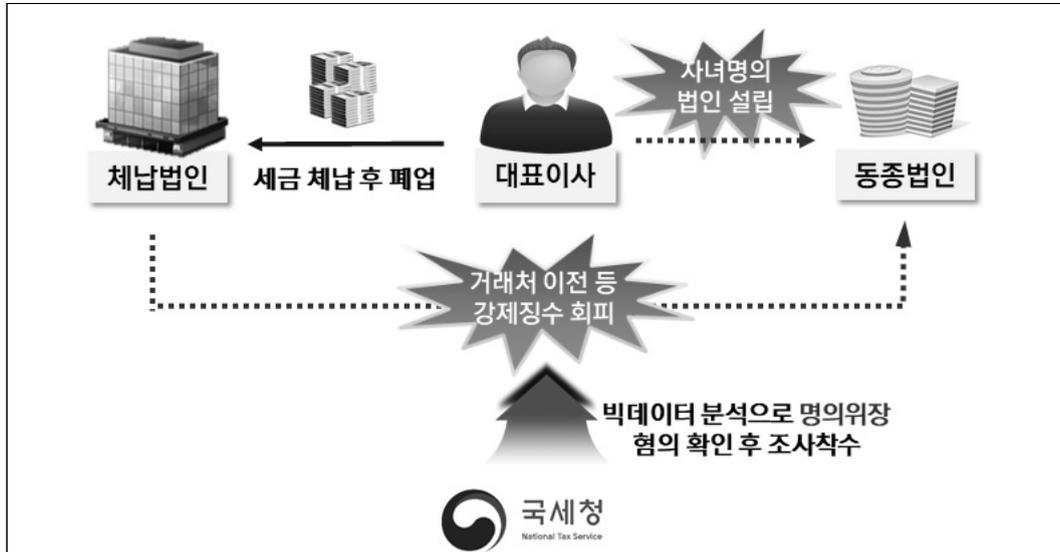
□ 체납 및 재산은닉 현황

- 땅부자로 알려진 E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수도권 인근에 소재한 고가의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체납하였으며, 남은 부동산은 친인척 등에게 명의신탁을 통해 강제징수를 회피
- 주민등록 주소지와 다른 곳에서 이혼한 배우자와 고급아파트에 거주하면서 특별한 수입 없이 호화생활을 영위

□ 체납추적조사 방향

- 체납자와 친인척의 소득소비 지출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좁혀진 생활반경 내 가족들의 거주지 탐문을 통해 실거주지를 확인하여 수색 등 추적조사 착수

사례 6 대표자 자녀 명의로 유사 법인 설립하여 강제징수 회피



□ 체납 및 재산은닉 현황

- 공구·철물 도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F 법인은 매출누락 및 세금계산서 미발행에 따른 부가 가치세, 법인세가 고지되어 체납이 발생하고 신용카드 압류, 출자자에 대한 2차 납세의무 지정되자 폐업하고
- 대표자의 자녀를 대표로 내세워 동종 업종의 G 법인을 설립하고 압류 등 강제징수를 지능적으로 회피
- 빅데이터 분석(동종업종·장소 및 거래처 일치 여부 등)을 통해 F 법인의 모든 자산과 부채, 거래처 등을 G 법인이 사실상 승계한 사실 확인

□ 체납추적조사 방향

- 금융거래내역 분석 등을 통해 명의위장 혐의에 대한 추적조사하고 재산은닉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하고 고발 등 범칙처분 검토



붙임 2

수색 사례

사례 1 베란다 향아리 속에 숨긴 미화 7만달러

- 강제징수 회피 실태
 - 부동산 양도대금 일부를 외화로 환전하여 은닉하고 강제징수회피

- 추적조사 결과
 - 체납자의 주소지에 잠복·탐문을 통해 체납자 및 가족 거주사실을 확인하고 체납자가 외출을 위해 현관문 개문하였을 때 수색 착수
 - 체납자는 별다른 저항 없이 수색을 받아들였고, 베란다 잡동사니에 숨겨놓은 향아리 안 겹은 비닐봉지에서 외화다발 발견(신권 1백 달러 700장)하여 현금징수

사례 2 자녀명의 주택의 옷장 등에 은닉한 외화·현금 8억원 압류

- 강제징수 회피 실태
 - 주식 양도대금 백억원 이상을 외화, 현금으로 400여회에 걸쳐 인출하여 자녀의 전원주택에 은닉하여 강제징수 회피(금융거래내역 분석)

- 추적조사 결과
 - 체납자의 주거태 은행 등에서 잠복·미행을 통해 체납자가 자녀 명의 전원주택에 실거주하는 것을 확인
 - 실거주지·주소지·사업장 등을 동시 수색하여 옷장·화장대 및 차고지 고급승용차에서 고액의 현금과 순금제품 등을 압류*
 - * 1백 달러 3,072장, 5만 원권 3,787장, 1만 원권 12,618장 등
 - 양도대금을 현금 출금하는 등 고의적인 재산은닉행위에 대해서는 체납자 및 관련자를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 예정

코로나19로 인한 사업보고서 등 제출지연 관련 제재 면제 심사결과

- 금융위원회, 2022. 4

◇ 증권선물위원회는 3.23. 코로나19로 인해 불가피하게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기 어려운 회사 23사와 감사인 16사에 대해 행정제재를 면제하고 제출기한을 연장

1. 그간의 경과

-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23. 코로나19 영향으로 재무제표·감사보고서·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행정제재*를 면제한다는 방침을 발표**하였습니다.
 - * ①감사전 재무제표 미제출시 감사인 지정 등, ②감사보고서 미제출시 감사업무 제한 등, ③ 사업보고서 미제출시 과징금 등
 - ** 「코로나19로 인한 사업보고서 등 제출지연에 대한 제재 면제 처리 계획」(22.2.23.,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공인회계사회·한국거래소 등)

2. 제재면제 신청 접수 및 검토

-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신청기간(3.7.~3.14.) 동안 회사감사인으로부터 제재면제 신청을 접수하였고, 총 23개 회사가 제재면제를 신청하였습니다. (24개사 신청, 1개사 자진철회)
-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신청 내용의 제재면제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제출된 서류(신청서, 의견서 등)를 확인하였으며,
 - 해당 회사가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거래소 협조를 받고, 신청회사로부터 추가 자료를 제출 받아 충실히 점검하였습니다.



3. 제재면제 여부 검토 결과

- 증권선물위원회는 제재 면제를 신청한 23개사 모두(회사 23개사* 및 그 감사인 16개사)에 대해 제재면제를 결정하였습니다.
 - * 상장 19개사(유가증권 4, 코스닥 12, 코넥스 3), 비상장 4개사
 - 주요사업장 등이 외국에 위치한 경우는 물론이고, 국내에 위치한 경우에도 코로나19로 인한 결산감사 지연 등이 인정*되는 경우 제재를 면제하여 기업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지역간 이동 제한(중국), 회사·감사인 담당 인력의 코로나19 확진자가 격리로 인한 업무 공백 등
 - 제출 지연 보고서별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감사 전 재무제표는 작성되었으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작성이 지연된 경우(17개사)가 대부분이었습니다.
- 제재를 면제받은 회사 중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21개사) 및 그 감사인은 '22.1분기보고서 제출기한(5.16.*)까지 감사 전 재무제표※,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 단, 주권상장 외국법인(2개사)의 경우, '22.1분기보고서 제출기한(5.31.)까지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을 연장
 - 한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 아닌 법인(2개사) 및 그 감사인은 6.16.까지 감사 전 연결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존 감사보고서 제출기한인 5.2.에서 45일 연장)
 - ※ 감사 전 (연결)재무제표 제출 지연 회사(4개사)의 경우,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위해 필요한 기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감사인과 협의하여 제출 시기 결정

< 제재 면제 회사 및 감사인 현황 >

(단위: 개사, 개)

회사감사인 구분 (회사수)			위반대상 보고서 (개수)		연장된 제출기한
회사 (23)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내국법인 (19*)	감사 전 재무제표 (2*)		5.16.
			사업보고서 (19*)		
		외국법인 (2)	사업보고서 (2)		5.31.
	K-IFRS미적용&연결 (2)		감사 전 연결재무제표 (2)		6.16.
감사인 (16)			감사 보고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19)	5.16.
				K-IFRS미적용&연결 (2)	6.16.

* 내국법인 19사 = 2사(감사 전 재무제표 위반) + 19사(사업보고서 위반) - 2사(모두 위반)

- 투자자 보호 및 관련 불확실성 최소화를 위해 상장법인은 제재 면제 신청 처리결과를 공시

시스템*에 공시할 예정이며,

* 한국거래소 KIND(kind.krx.co.kr) 또는 금융감독원 DART(dart.fss.or.kr)

- 한국거래소는 제재를 면제받은 상장회사에 대해 연장된 기한까지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절차를 유예할 예정입니다.
- 또한, 제재를 면제받은 회사는 결산외부감사 종료 후 재무제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의 연기·속회를 개최하고, 상법 시행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연기·속행되는 주주총회 1주일 전까지는 주주에게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통 화 명	3월 25일(금)	3월 28일(월)	3월 29일(화)	3월 30일(수)	3월 31일(목)
미 달 러 (USD)	1219.40	1218.30	1225.70	1220.50	1210.80
일 본 엔 (JPY)	996.53	995.79	988.27	992.48	992.74
영 국 파 운 드 (GBP)	1609.00	1604.81	1605.97	1598.79	1590.81
캐 나 다 달 러 (CAD)	973.30	975.93	979.11	976.56	970.15
홍 콩 달 러 (HKD)	155.85	155.63	156.56	155.92	154.69
위 안 화 (CNH)	190.91	191.11	191.83	191.30	190.02
유 로 화 (EUR)	1342.38	1337.69	1347.60	1353.90	1351.13
호 주 달 러 (AUD)	916.74	915.80	919.28	917.88	909.01
싱 가 폴 달 러 (SGD)	898.30	896.83	900.69	899.87	895.13
말 레이시아링기트 (MYR)	288.53	289.35	290.69	289.66	287.98

2022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 발표

- 금융감독원, 2022. 4

◇ 금융감독원은 12월말 결산 상장법인 등의 사업보고서 제출시한(3.31.)이 임박함에 따라 「2022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을 마련하여 발표

1 기본 방향

- 경제 불확실성 지속에 따른 실적 악화 등 회계위험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중대 회계부정의 예방·포착·제재 활동을 강화하되
 - 경미한 회계위반에 대해서는 심사를 신속히 종결하여 올바른 재무정보를 적기 제공하고 상장사 회계점검을 확대할 계획
- 회계개혁에 따라 감사여건이 개선된 상황에서 품질관리수준 평가제도를 정착시켜 회계법인의 역량 강화를 유도하며
 - 피조치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감리프로세스를 개선하고 기술·환경변화에 걸맞게 디지털 감독역량을 강화하는 등 선진화된 방식으로 회계감독업무를 수행할 예정

⇒ 경제 불확실성, 회계·감사 환경변화 등 잠재위험에 대응하여 회계감독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성을 제고

2 중점 추진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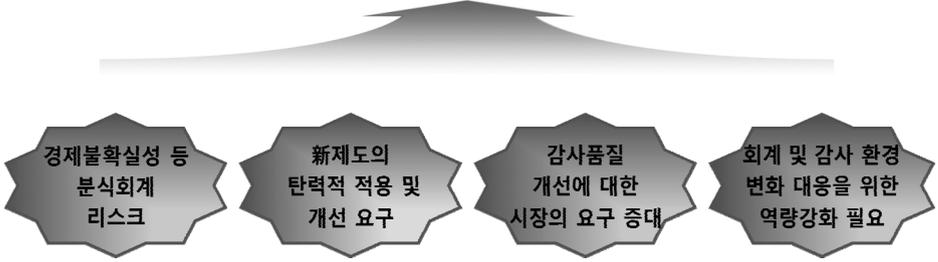
목표

회계감독의 실효성 제고를 통한 「신뢰받는 자본시장」 확립

중점 추진 과제

- 회계분식 고위험회사에 대한 감독 강화**
 - 회계분식 혐의기업에 대한 감시 강화 및 엄정한 감리 실시
 - 중대한 회계부정에 대하여 강화된 조치를 엄중 부과
 - 심사·감리 수단 및 적발기능 강화를 통한 분식유인 억제
- 심사·감리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상장사 회계점검 확대**
 - 재무제표 심사·감리의 신속처리원칙을 통한 효율성 제고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 안정적 정착 유도
 - 심사대상 산정방식 개선 및 테마심사 확대 실시
- 감사품질 제고를 위한 회계법인의 역량강화 유도**
 - 회계법인 감리 강화를 통한 사전예방중심의 감독 실시
 - 품질관리수준 평가제도의 정착 지원
 - 감사인 등록제도의 충실한 운영 및 개선방안 마련
- 감리 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한 회계감독 선진화**
 - 제재절차 합리화·간소화 등을 통한 피조치자 권익보호
 - 기술·환경 변화를 반영한 심사·감리업무의 디지털 전환 추진
 - 업무매뉴얼 정비 등을 통한 회계감독 역량 강화

위험·여건





가. 회계분식 고위험 회사에 대한 감독 강화

◇ 중대 회계부정의 예방·포착·제재 등 감독을 강화하여 투자자 및 이해관계자를 보호하고 자본 시장의 신뢰성 제고

① 회계분식 혐의기업에 대한 감시 강화 및 엄정한 감리 실시

- 계열사간 부당거래 등 분식위험이 높은 기업에 대한 기획감리 및 부정정보 등 분식혐의가 포착된 기업에 대한 신속 감리 실시
- 경제불확실성 지속에 따른 리스크요인을 상시 모니터링하면서 상장후 실적악화 기업 등을 심사대상으로 우선 선정

② 중대한 회계부정에 대하여 강화된 조치를 엄중 부과

- 고의적 회계위반 및 대규모 기업에 대하여 외부감사법상 과징금* 부과 등 강화된 제재수단을 단호히 적용
 - * 회계분식의 20%까지 과징금 부과, 감사·업무집행지시자 등 부과대상 확대

③ 심사·감리 수단 및 적발기능 강화를 통한 분식유인 억제

- 검찰수사, 공시위반 및 불공정거래조사 결과 등을 활용하고, 모바일앱 등 부정정보 채널의 운용방식 개선 및 포상금 지급사례 홍보 등을 통해 정보수집기능 강화

회계분식 고위험 회사 사례

- (계열사간 부당거래) 정상적인 판매가 불가능한 제품을 계열사에 인수하도록 하여 매출로 계상하고, 이러한 특수관계자 거래를 주식에도 미기재
- (임원 횡령)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이를 판매수수료로 허위 계상한 뒤, 추후 회수된 금액은 전기오류로 수정하지 않고 당기이익으로 계상
- (비정상적 자금사용) 실적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유상증자 또는 사모사채 발행 등으로 조달한 자금을 사업내용과 무관한 비상장주식, 사업권 등을 취득하는 데 사용한 것처럼 위장하여 유출

나. 심사·감리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상장사 회계점검 확대

◇ 재무제표 심사감리 신속처리 및 선정방식 개선 등을 통하여 올바른 재무정보 적기제공 및 회계점검 확대

① 재무제표 심사·감리의 신속 처리 및 효율성 제고

- 3개월 내 심사종료*, 심사·감리기능 분리 원칙의 철저한 이행, 내부협의회의 내실 있는 운

영 등을 통해 신속 처리 도모

* 위반발견, 기준해석 쟁점, 사실관계 추가확인, 소명지연 등이 발생한 경우 연장

②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 안정적 정착 유도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가 원활히 시행되도록 실무가이드 등을 통해 지원하고 점검* 및 감리** 실시

* 내부통제 설계, 운영, 평가 및 보고과정 등 업무전반을 점검하여 시스템 개선 유도

** 고의적 회계위반 혐의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감사결과 비적정 기업 등에 대해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를 적극 실시

③ 심사대상 선정방식 개선 및 테마심사 확대 실시

- 감사인 감리결과를 심사대상 선정에 반영하는 등 연계성을 강화하며, 시의성 있는 회계이슈* 를 조기에 선정·발표하고 중점 점검 분야를 지속 확대하여 테마심사를 더욱 활성화

* '22년 중점심사대상('21.6.27. 사전예고): ①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 손상 ② 특수관계자에 대한 수익인식 ③ 금융부채 인식 및 측정 ④ 영업이익 표시 및 영업부문 정보 공시

구 분	'19년	'20년	'21년	'20년 대비	
				증감	증감률(%)
표본 심사·감리	89	79	103	24	30.4
혐의 심사·감리	50	44	49	5	11.4
합 계	139	123	152	29	23.6

다. 감사품질 제고를 위한 회계법인의 역량강화 유도

◆ 품질관리수준 평가제도 등이 시장에 안착되도록 유도하여 회계법인 스스로 감사품질 향상을 도모토록 지원

① 회계법인에 대한 감리 강화를 통해 사전예방 중심의 감독 실시

- 품질관리수준, 상장사지정회사 감사비중 등을 감안하여 감리범위주기 등을 차등화하고, 취약부문 등에 대해 테마감리 실시

- 중요한 감사절차 위반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합리적 조치*를 통해 회계법인의 개별회사에 대한 감사능력 제고 유도

*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실시한 감사절차를 존중하되, 중요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수행하거나 합리적 이유 없이 생략한 경우 엄중 조치

② 회계법인 품질관리수준 평가 제도의 정착 지원



- 품질관리수준 평가결과에 대해 회계법인에 피드백을 제공하고 시행과정의 문제점 개선 등을 통하여 제도 안착 유도
- ③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도의 충실한 운영 및 개선방안 마련
 - 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유지요건 및 독립성 위반과 관련한 조치양정기준을 마련·개선

감사품질 제고를 위해 시행 중(예정)인 제도

- (품질관리수준 평가) 평가기준에 따라 감사인이 품질관리수준 평가 관련 사항을 감독기관에 보고하고, 감독기관은 이를 회계감독에 활용(예정)
- (등록요건 점검)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법인이 매년 등록요건을 유지하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감사품질관리의 효율성 제고(예정)
- (감사인 감리결과 공개) 감사인감리 결과 개선권고사항, 품질관리 우수사례를 공개하여 시장평가기능을 제고하고 감사품질 중시 문화가 정착되도록 유도

라. 감리 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한 회계감독 선진화

◆ 회계감리·제재 절차 개선, 디지털 감독역량 강화 등을 통해 선진화된 방식으로 회계감독 업무 수행

- ① 제재절차 합리화·간소화 등을 통한 피조치자 권익 보호
 - 재무제표 심사결과 감리전환 시 회계위반 세부 혐의사항 등을 통지하여 감리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방어권 보장 확대
 - 중요 조치 예정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통지 전에 사전심의회 논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조치의 완결성을 제고
- ② 기술·환경변화를 반영한 심사·감리업무의 디지털 전환 추진
 - 심사·감리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데이터분석 소프트웨어 및 XBRL 기반의 재무정보*를 활용한 전산감리기법 활성화 추진
 - * 주식사항도 재무보고 국제표준언어(XBRL) 형태로 표준화되면 주식사항을 분석하여 위험요소를 발굴하고 이를 심사대상 선정기준으로 활용
- ③ 업무매뉴얼 정비 등을 통한 회계감독 역량 강화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등 업무매뉴얼을 마련·정비하고, 회계아카데미, K-IFRS 세미나 등을 통해 심사·감리업무 능력 제고

- * (제도 위주 감리) 재무제표 감리 지적사항 관련 내부통제 위주로 점검
(본격 감리) '22사업연도 재무제표가 공시되는 '23년부터 시행되며,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운영·평가·보고 과정 전반에 대해 세부적으로 점검

3 심사감리 실시대상

◇ 금융감독원은 2022년에 상장법인 등 180사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감리 및 회계법인 17사
에 대한 감사인 감리를 실시할 예정

※ 인력 현황, 코로나19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실시계획 변경 가능

가. 재무제표 심사·감리

- 재무제표 심사제도의 정착, 업무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년(171사) 대비 9사 증가
한 180사*에 대해 심사·감리를 실시할 계획
 - * 상장법인 및 비상장인 금융회사·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으로, 회계기준 위반 건수 및 위반
의 규모·성격·영향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금감원장 경조치(주의, 경고)로 제재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신
속히 종결하고
 - 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 업무 효율화 제고를 통해 향후에도 심사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
- 표본심사 대상은 사전예고된 회계이슈, 회계심사·감리 결과 활용*1, 기타 위험요소*2, 장기
미감리 등 100여사 내외로 선정
 - *1 ①재무제표 심사·감리 결과 지적된 회사비율이 높은 회계법인이 감사한 회사, ②감사인감리
결과 개별감사업무 미비점이 중요하거나 과도하게 발견된 회사
 - *2 분식위험지표가 높은 회사, 횡령·배임이 발생한 회사 등
 - 혐의심사 대상은 회계오류수정*, 회계부정 제보 및 기타 감독업무 중 확인된 위반 혐의 등으
로 과거 경험 등을 고려하여 50사 내외로 예상
 - * 자진 오류수정의 경우에는 중요성 4배 이상 금액 수정 또는 최근 5년간 3회 이상 수정(「외
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나. 감사인 감리*

- * 회계법인이 품질관리시스템을 적절히 설계·운영하는지 여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업무 수행
시 회계감사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는 감리



- 전년(13사) 대비 4사 증가한 총 17개 회계법인(가군 2사, 나군 3사, 다군 6사, 라군 6사)에 대해 감사인 감리를 실시할 계획
 - 감사인등록제 시행('19년) 이후 한번도 감리를 받지 않은 회계법인 13사와 감리주기, 품질관리수준 및 상장사지정회사 감사 비중 등을 고려하여 추가로 4사 선정

< 감사인감리 군별 구분 >

구 분*	감리주기	해당 군별 회계법인 수	'22년 계획	실적			
				'19	'20	'21	계
가군	2년	4	2	2	2	2	6
나군	3년	8	3	-	3	4	7
다군	3년	18	6	4	3	5	12
라군	3년	10	6	1	1	2	4
합계		40	17	7	9	13	29

* 감사인 지정대상 회사의 규모별로 지정감사를 수행할 수 있는 회계법인을 구분하기 위하여 등록 회계사 수, 감사업무 매출액, 손해배상 능력 등을 고려하여 분류

- 美 PCAOB(상장회사 회계감독위원회)와 국내 회계법인에 대한 공동검사 시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

회계법인에 대한 미국 PCAOB와의 공동검사 주요 내용

- (개 요) 美 기업회계개혁법(Sarbanes-Oxley Act)에 따라 美상장기업을 감사하는 회계법인은 의무적으로 PCAOB에 등록하고 정기검사를 받음
- (연 혁) '07.3월 美 PCAOB와 공동검사 양해각서 체결 이후 '21.12월까지 5개 회계법인에 대해 총 20회 공동검사 실시
- ('22년 계획) PCAOB 등록 국내 회계법인(13개) 중 삼정, 안진에 대해 공동검사 예정
 - ※ 미국에 상장된 국내기업 감사현황
 - (삼일) 우리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KT, 매그나칩반도체, 쿠팡
 - (삼정) KB금융지주, LG디스플레이, 포스코, 그라비티
 - (한영) SK텔레콤, 한국전력

4 기대 효과

- 사전예방적 감독 강화 및 중대 회계부정에 대한 단호한 제재를 통해 회계분식 유인을 억제하고, 자본시장의 질서 확립에 기여

- 테마심사를 활성화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여 회계위험요소에 대한 사전점검 기능 강화
 - 중대 회계부정 중심으로 정보수집기능을 강화하고 엄정하고 철저한 사후제재를 함으로써 감독 실효성 제고
-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신속히 처리하여 기업의 수검 부담을 완화하고, 감리·제재절차를 개선하여 피조치자 권익 보호
- 경미한 사항은 계도 위주로 감독하고 피조사자 방어권 보장을 확대하여 감독 효율성 및 제재 수용성 제고
- 품질관리수준 평가 결과를 피드백하고, 상장사·지정회사 감사비중 등을 감안하여 감사인감리를 차등화함으로써 회계법인 간 감사품질 중심의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규제환경 조성
- ⇒ 新외감법상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여 시장참여자의 회계 투명성 및 자본시장 신뢰성에 대한 인식 제고 기대

고용노동부, 여행업 등 14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 및 택시운송업 신규 지정

- 고용노동부 2022. 4

-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22년도 제2차 고용정책심의회(3.15.~17.)를 개최, 여행업 등 이미 지정된 14개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정기간 연장과 택시운송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지정을 심의·의결했다.
 - 심의회에는 위원장인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과 관계부처 정부위원, 노사 대표 및 관련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 * 고용정책심의회 구성: 노동계, 경영계, 연구기관, 관련 전문가, 관계부처
- 심의회는 업종별 피보험자 수 감소율,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율, 종사자 수 등 고용 관련 지표와 산업생산지수,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매출 등 경영 관련 지표 및 현장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으며,
 - 해당 업종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영업피해와 고용불안이 심각하고, 추후 고용회복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연장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

- 고용정책심의회는 '22.3.31. 종료 예정이던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등 14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을 '22.12.31.까지 연장했다.
 - * ('20.3월 지정)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 ('20.4월 지정)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 ('21.4월 지정) 영화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 전용 카지노, 항공기부품제조업, 노선버스(준공영제 제외)
- 14개 업종은 '20년 3월 이후 출입국 제한, 집합금지·제한 등 코로나19 관련 방역 규제로 정상적 영업이 어려운 상황으로,
 - 업종별 매출은 코로나19 발생 전인 '19년도보다 15~99% 감소했고, 종사자 수는 5~50% 이상 줄어 피해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여행업(-39.4%), 유원시설(-26.5%), 관광숙박업 (-10.4%) 등 대부분 업종에서 코로나19 확산 전보다 대폭 감소
 - * '19.2월~'20.1월 평균 피보험자수와 '21.2월~'22.1월 평균을 비교
-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률) 관광운송업(64.1%), 항공기취급업(63.2%), 면세점(25.3%) 등 모든 업종에서 전 산업 평균(2.3%)을 상회
 - * '21년 업종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인원/피보험자수
- ◇ (업종별 산업생산지수) 모든 업종에서 '20.3월 이후 크게 하락하여, '22.1월 기준 대부분 업종에서 '19년도 이전 수준의 15~60%에 불과
 - * 업종별 매출·생산량 등 일정기간 동안 이루어진 산업생산활동의 수준을 나타낸 지표

- 심의회는 이러한 고용·경영상황의 엄중함과 최근 오미크론 변이 유행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고려하고,
 - 본격적 업황 회복·고용개선이 나타나기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14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을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택시운송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신규지정>

- 고용정책심의회는 택시운송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22.4.1부터 '22.12.31.까지 신규 지정했다.
- 현재 택시운송업 경영상황은 코로나19 확산 및 방역규제에 따라 택시 이용이 줄어들어 코로나19 이전보다 악화됐다.
 - 특히 음식점 등 매장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해 야간시간대(22시~4시) 영업을 대폭 감소*한 영향으로 택시회사 매출이 급감**했다.
 - * 시간대별 택시 영업건수(서울지역) 분석시, '21년 야간시간대(22~4시) 영업건수는 '19년보다 46.2% 감소했음(전체 영업건수는 27% 감소)
 - ** '22.1월 택시운송업 생산지수(총매출 관련 지표)는 코로나19 이전 3년 평균보다 27% 감소
- 또한, 운행 수익성 악화로 인해 택시 업계 고용 사정이 어려운 상황이다.
 - 택시운송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는 '20.3월부터 '22.1월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코로나19 이전('19년도 평균)보다 26% 감소했고,
 - '21년 실업급여 신규신청자 수는 '19년보다 52% 증가하는 등 업계 고용상황이 점차 악화되고 있다.
- 이에 심의회는 택시운송업이 현재 고용위기 상황이고, 추후 고용회복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했다.



< 현장간담회 의견 청취 >

□ 심의에 앞서, 고용노동부는 관련 협회 및 부처 관계자가 참여하는 현장간담회('22.2.25, '22.3.2.)를 통해 업종별 구체적 피해 현황을 파악하는 등 현장의견을 적극 수렴했다.

- 항공기취급업 영업비용 중 70% 이상이 인건비로 지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종료시 고용유지비용이 급증하여 대량 해고에 직면한 상황(항공기 지상조업업체)
- 청소년 수련시설은 코로나9 유행 이후 학교·단체 예약 전무, 소상공인·영업시간 제한업종에 해당하지 않아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중단시 고용유지 불가(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 '21년 전국 유원시설 379개 중 절반 이상의 업체(205개)는 200일 이상 임시휴장 중인데, 인력 감축시 안전관리 등 문제 발생(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

<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내용 >

-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연장) 시 다음과 같은 지원이 제공된다.
 - 사업주는 유급휴업·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및 지원한도 상향, 사회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 사업주 훈련지원 지원한도 확대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 (고용유지지원금) 유급 휴업·휴직수당의 2/3→90%, 1일 6.6만원→7만원
 - ▲ (보험료 혜택) 고용·산재보험료·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납부기한 연장 및 건강보험·국민연금 연체금 미부과/ 고용·산재·건강보험 체납처분 집행유예
 - ▲ (사업주 직업훈련) 지원 한도 상향(240%→300%) 및 훈련비 지원 단가 인상(100→150%)
 - 근로자는 생활안정자금 상환기간 연장 및 한도 인상,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한도 상향,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자부담률 인하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 (생활안정자금) 상환기간: 최대 5년 → 8년, 한도액: 자녀학자금 5백만원 → 7백만원 등
 - ▲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한도) 최대 1천만원 → 2천만원
 - ▲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지원액 인상(300→400만원) 및 자부담률 인하(15~55%→0~20%)
- 고용노동부는 3월 중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를 제·개정하여 구체적인 지정범위와 지원내용을 확정하여 안내할 계획이다.
- 안경덕 장관은 “전반적인 고용상황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업종들의 고용상황 회복은 지연되고 있다.” 라고 하면서,
 - “이번 지정기간 연장·신규 지정이 해당 업종 고용위기 극복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고용상황을 면밀히 살펴보며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하루빨리 극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라고 강조했다.

붙임 1 - 특별고용지원업종 연장 및 추가지정 범위

지원기간 연장 업종

<여행업>

표준산업분류상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또는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1호의 여행업이면서 해당 자치단체에 등록된 업체

<관광숙박업>

표준산업분류상 호텔업·휴양콘도 운영업 또는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관광숙박업 *이면서 해당 자치단체에 등록된 업체

<관광운송업>

표준산업분류상 전세버스 운송업·외항 여객 운송업·내항 여객 운송업·내륙수상여객 및 화물 운송업·항만내 여객 운송업·항공 여객 운송업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관련법에 따라 해당 자치단체 또는 관할 관청에 등록 또는 승인받은 업체

<공연업>

표준산업분류상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또는 「공연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공연장 소재지 자치단체에 등록된 업체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업체

<항공기취급업>

표준산업분류상 기타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 또는 「항공사업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항공기취급업을 등록한 업체

<면세점>

표준산업분류상 면세점 또는 「관세법」 제174조, 제176조의2 및 제196조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보세판매장 특허를 받은 업체 및 전체 매출액 중 위 보세판매장 특허를 받은 업체와 관련된 매출액이 50% 이상인 업체

<전시·국제회의업>

표준산업분류상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또는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전시사업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확인을 받은 업체 및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4호의 국제회의업이면서 해당 자치단체에 등록된 업체

<공항버스>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업체 중 운행노선에 공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매출액 50% 이상이 공항노선과 관련된 업체



<p><영화업> 표준산업분류상 영화 관련 업종 또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제10호에 따른 영화제작·배급업, 영화상영관으로 자치단체에 등록된 업체</p> <p><수련시설> 표준산업분류상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또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 수련시설로 해당 자치단체에 등록된 업체</p> <p><유원시설> 표준산업분류상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또는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유원시설업으로 해당 자치단체가 허가한 업체이거나 신고·수리한 업체</p> <p><외국인 전용 카지노> 「관광진흥법」에 따른 카지노업으로 문화부장관이 허가한 외국인 전용 카지노이거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허가한 외국인 전용 카지노</p> <p><항공기부품제조업> 표준산업분류상 항공기용 엔진 및 부품제조업</p> <p><노선버스> 시외버스(고속버스 포함), 시내버스(마을버스·농어촌버스 포함, 준공영제 대상업체 제외)</p>

□ 추가지정 업종

<p><택시운송업> 표준산업분류상 택시운송업(개인택시 업체 제외)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 및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의 일반택시운송사업자</p>
--

붙임 2 -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 내용

구분		일반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유지 지원금 (유급휴업·휴직)	지원한도	1일 6.6만원	1일 7만원 (대규모기업 6.6만원)
	지원수준	우선지원대상기업: 휴업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2/3)	우선지원대상기업: 휴업수당의 90% (대규모기업 2/3-3/4)

고용노동부, 여행업 등
14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 및 택시운송업 신규 지정

고용유지 지원금 (무급휴업·휴직)	지원한도	- 1일 6.6만원과 평균임금의 50% 범위내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최초 180일은 일반과 동일, 추가 90일은 월 50만원 정액 지원
	지원요건	- 무급휴직 실시(30일) - 무급휴직 전 1년 이내 유급휴업(3개월)		- 무급휴직 실시(30일) - 무급휴직 전 1년 이내 유급휴업(1개월)
직업훈련	사업주 훈련지원	지원한도	납부보험료의 100% (우선지원대상기업 240%)	납부보험료의 130% (우선지원대상기업 300%)
		훈련비 지원 단가	우선지원대상기업 100% 1,000인 미만 60% 1,000인 이상 40%	우선지원대상기업 150% 1,000인 미만 100% 1,000인 이상 90%
	국민내일배움카드	- 5년간 훈련비 300만원 지원 - 훈련비 자부담율 15~55%		- 5년간 훈련비 400만원 지원 - 훈련비 자부담율 0~20%
	채용예정자 양성훈련	훈련수당 20만원		훈련수당 40만원
	훈련연장급여요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4조 제1항 제1호~제4호 요건 모두 충족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4조제1항제1호만 충족해도 지급대상 선정 가능
	생계비 대부한도	1명당 1천만원		1명당 2천만원
고용·산재보험료 및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납부기한 연장 × 체납처분 집행유예 ×		납부기한 연장 ○ 체납처분 집행유예 ○	
건강보험료(보건복지부)	체납시 연체금 징수 체납처분 집행유예 ×		체납시 연체금 미부과 체납처분 집행유예 ○	
국민연금(보건복지부)	체납시 연체금 징수		체납시 연체금 미부과	
고용보험 지연신고에 따른 사업주 과태료	부과(1인당 3만원)		면제	
국민취업지원제도II	중위소득 100% 이하 참여		특별고용지원업종 실업자 소득요건 면제	
근로자 생활 안정 자금용자	소득요건	(임금감소·소액생계비) 3인가구 중위소득 2/3 이하의 70%(‘22년 월 196만원)	(임금감소·소액생계비) 4인가구 중위소득 2/3 이하의 70%(‘22년 월 239만원)	
		(이외 생계비) 3인가구 중위소득 2/3 이하(‘22년 월 280만원)	(이외 생계비) 4인가구 중위소득 2/3 이하(‘22년 월 341만원)	
	상환기간	최대 5년(거치 1년/상환 3~4년)	최대 8년(거치 1~3년/상환 3~5년)	
	자녀학자금 한도액	1명당 연 5백만원	1명당 연 7백만원	
자녀학자금 대상자	고등학생 자녀		고등학생 또는 대학생 자녀	
체불 근로자 생계비 용자	상환기간	최대 5년(거치 1년/상환 3~4년)		최대 8년(거치 1~3년/상환 3~5년)
	한도액	1천만원		2천만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2년 시행)	5인 이상 기업이 청년을 신규 정규직 채용시 월 80만원(최대 12개월) 지원		5인 미만 기업도 지원 가능	
대지급금 관련업무 공인노무사 지원대상	상시 10명 미만의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상시 30명 미만의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까지 확대 적용	



붙임 3 - 특별고용지원업종 제도 설명자료

□ 제도 개요

-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우려)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 고용유지조치 및 실업자 재취업, 근로자 생활안정 등을 지원
 - * (관련규정) 고용정책기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 지정 기준

- 다음 정량요건과 정성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

< 정량요건 기준 >

- ▶ 해당 업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이하 "피보험자"라 한다) 증감률이 같은 기간 모든 업종 평균 피보험자 증감률보다 5%p 이상 낮은 경우
- ▶ 특별고용지원 업종 신청 직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가 해당 기간 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보다 2표준편차 이상 감소한 경우
- ▶ 특별고용지원 업종 신청 직전 1년간 구직급여 신규신청자 수가 해당 기간 전 1년간 구직급여 신규신청자 수보다 2표준편차 이상 증가한 경우
- ▶ 고용상황의 지속적인 악화로 특별고용지원업종 신청 직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가 해당 기간의 3년 전 시점을 기준으로 1년간의 평균 피보험자 수보다 2표준편차 이상 감소한 경우

< 정성요건 기준 >

- ▶ 한국은행 기업실사지수(BSI), 해당 업종 주요 기업 재무상황 및 신용위험도, 산업생산지수, 해당 업종 휴폐업체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 ▶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전환 또는 폐업 등으로 급격한 고용감소가 확실시되는 경우

□ 지정 절차

- 사업주단체·근로자단체 등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 → 현장간담회 등 의견수렴 → 고용정책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

□ 지원 내용

- 사업주 고용유지·근로자 생계안정 및 재취업 훈련지원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직업훈련·근로자 대부 등 우대 지원

□ 지정 기간

- 최초 지정시 최대 2년, 1년 범위에서 3회 연장 가능(최대 5년)